하남시 아동보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 안 번 호 2736

제출연월일 : 2023. 8 . .

제 출 자:하남시장

1. 관련법규 및 근거

-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)
-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2. 제안사유

○ 하남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・ 운영 할 책임이 있어 종합복지타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,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『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』제4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위탁시설현황

기관명	위치	개관일시	시설규모	비고
하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	하남시종합복지타운 5층 (신장동 574)	2024년초	종합복지타운 5층 (191.74㎡)	

※ 기관명칭은 '시군구명아동보호전문기관'을 원칙으로 함(보건복지부 지침)

- 위 탁 자 : 하남시장
- 수 탁 자 : 3년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, 아동학대예방

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방법: '선정위원회' 구성하여 심의 결정
- 위탁사업 내용
 -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 조사 협조 및 응급 보호 지원
 - 피해아동, 아동의 가족 및 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교육
 -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
 -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- 조직 · 인력 구성 및 관리 등
- 소요예산(2023년 하반기) : 금315,000천원
 - 인건비(14명) 및 사업비 6개월분

3. 주요내용

- 2023년 9월 :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접수
- 2023년 10월 :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
- 2023년 11월 : 수탁기관 결정, 위탁계약 체결
- 2023년 위탁계약 체결 이후 종사자 채용,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남시 약600개 사례 이관 업무 개시
- 2024년 3월(예정) :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

관련 법령 및 조례

1 아동복지법 제45조

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삭제〈2019. 1. 15.〉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 1. 28., 2019. 1. 15., 2020. 4. 7.〉
-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1. 15.〉
- 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1. 15.〉
-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,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,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

-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〈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〉
 -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〉
 -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

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〈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〉

-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〈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〉
-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워
-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 〈개정 2020. 1. 3.〉

[본조신설 2004. 9. 6.][제22조의2에서 이동 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3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

- 제13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)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
 - 2.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 - 3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- 4.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
 - 5. 그 밖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 - 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